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000 의원 외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신광렬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신광렬

직 위:법 관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신광렬(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1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29조 3항, 4항, 제26조등 법률을 위반하였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기밀누설죄 등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 (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져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90. 사법연수원을 수료(19기)하여, 1993. 법관으로 임용된이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1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6. 2.부터 2018.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18.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2019. 1. 현재까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 피소추자의 행위

- 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를 위한 영장 수사 정보 수집 (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2~195면)
 - 1) 임종헌(당시 법원행정저 차장)과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고영한(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6. 4.경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과 현직 부장판사 김수천 등이 소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1.경 현직 판사 구속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문상배의 비위사실이 언제 외부에 알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비리까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들이 표류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임종헌 등은 원칙대로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헌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소추자(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소추자는 다시 영장전담판사 조의연, 성창호 등에게 영장 재판 과정에 지득한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6. 5. 3.경부터 9. 9. 경까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위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최유정 변호사 등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관련자들의법관 비위에 대한 진술, 그들의 통신자료 및 법관 접촉 내역, 금품수수 경위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다음 [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종헌에게 송부하고, 임종헌은 이를 수시로 고영한, 양승태에게 보고하였다.

[표 1] 피소추자가 임종헌에게 송부한 영장 수사 정보(임종헌 공소장 범죄일람표3)

| 순번 | 작성일자 | 문건(파일)명 | 내용 | 영장판사 (영장종류) |
|----|--------------|--------------------------------|---|--------------------------|
| 1 | 2016. 5. 3. | (160503)○○○체포등사 건 사실관계[○○○] |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 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 (압수수색, 체포, 통신) |
| 2 | 2016. 5. 10. | (160510)○○○사건 [○○○] | ○○○의 사건수임 경위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 (압수수색, |

| | | | | 체포, 계좌) |
|----|-----------------|---|--|----------------------|
| 3 | 2016. 5. 12. | (160512)○○○사건기록 검토 [○○○] | ○○○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 의 진술내용 및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 기재 | ○○○ (압수수색, 계좌) |
| 4 | 2016. 5. 17. | (160517)서울중앙형사 [○○○] | 계좌추적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 진행 경 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 기재 | ○○○ (압수수색, 계좌) |
| 5 | 2016. 5. 18. | (160518)서울중앙형사 (○○○) |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 기재 | ○○○ (구속연장 허가) |
| 6 | 2016. 5. 25. | (160525)○○○(1) | ○○○의 진술 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 (계좌) |
| 7 | 2016. 8. 10. | 수사보고서(피의자 ○○○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 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 | ○○○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 기재 | ○○○ (압수수색, 계좌) |
| 8 | 2016. 8. 23. | (160823)○○○부장 [○○○] | ○○○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경위, 관계자의 진술 등 기재 | ○○○ (압수수색, 계좌) |
| 9 | 2016. 9. 3. | ○○○ 부장 사건 일자별 정리요약 | ○○○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내역, 그에 대한 구속영 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 기재 | ○○○ (구속) |
| 10 | 2016. 9. 9. | (160909)○○○부장구속 기간 연장[○○○] | ○○○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 관계자들의 진술 등 기재 | ○○○ (구속연장 허가) |

3)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영장전 담판사로 하여금 재판 중 지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누설하게 하고, 이를 다시 임종헌 등 법원행정처에 누설하였다.

- 나.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를 위한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5~196면)
 - 1) 임종헌과 양승태, 고영한은 위와 같이 피소추자를 통하여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장재판에 개입함으로써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 2) 임종헌은 2016. 6. 22.경 피소추자에게 김현보로부터 받은 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수집한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 7명1의 가족관계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며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검찰이 법관수사 확대를 위하여 김수천 부장 등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이 자료를 참고하여 영장 청구 대상에 의혹의 대상인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의 영장심사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소추자는 그 지시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위 문건과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였다.
 - 3)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위 법관들의 가족관계 정보를 파악한 문건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 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에 관한 검찰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 사 대응방안 검토 지시(2018.11.14.자 임종헌 공소장 196~198면)

¹⁾ 김수천. 최규일. 임동규. 김성수. 박종택. 성수제. 장일혁

- 1) 임종헌과 양승태, 고영한은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 활용하여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한편, '정운호 게이트'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여 법원 내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 2) 임종헌은 2016. 5.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소추자,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실장 심준보, 윤리감사관 김현보, 공보관 조병구,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민수, 사법정책실 심의관 최누림 등에게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 확대를 저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u>피소추자는 2016. 8. 17.경 당시까지의 수사 상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 정리하여 임종헌에게 보고</u>하였고, 임종헌은 이를 토대로 피소추자 및 임성근(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 장판사)과 함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확대 중단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된 검찰지휘부의 의혹을 찾아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검찰 특수수사의 영장 심사와 본안 판단에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 3)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다.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의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원칙, 사법권의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3권분립원칙,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4항, 제26조는 수석부장의 경우 법원장

을 보좌하여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부장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3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u>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u>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 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적어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 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 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 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

정에 지득한 수사 정보는 영장재판의 심리에 관한 자료임과 동시에 수사기 밀로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 또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예규 에 따라 신병에 관한 사건의 경우 사건 종결시 그 결과만 재판사무시스템 을 통해 보고받을 뿐이므로, 영장청구서나 수사기록으로부터 위 예규의 범 위를 넘어 수사진행 상황, 확보된 진술 등 증거관계,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죄에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피소추자는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2. 가항), '통상의 영장 심사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어긴 가이드라인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하고(2. 나항), 임종헌과 함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 확대 중단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2. 다항) 법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서슴지않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담당 판사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지득하여 임종헌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누설하 여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원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가 법관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영장전담판사가 지득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부패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트린 것이다. 나아가 그 성 격상 사법부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 고자 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제7조의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이 천명한 3권분립의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위법하게 영장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위법한 가이드라인을 후배 법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직접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3차 보고서가 밝힌 평가기준상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독립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한 행위'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마.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 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 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재판의 독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 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 함이 없다.

4. 탄핵의 정당성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 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 명에 이르고, 그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 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대)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

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아서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 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 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소추자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징계에도 회부되지 아니한바,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이른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거나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나중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 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 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 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 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 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 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 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 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 심받게 될 것이다.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신광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